##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64

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김위상·김선교·서범수

이종배 · 임이자 · 박정하

강승규 · 김예지 · 김소희

우재준 · 김미애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성비위,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 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살인, 마약, 아동학대, 사기, 도주운전 등 성비위, 음주운전 과 비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범죄가 통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문제가 있음.

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·종료 통보 의무에 살인, 마약, 아동학대, 사기, 도주운전 범죄 등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53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3조의2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「형법」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, 같은 편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, 같은 편 제19장 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, 같은 편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, 같은 편 제24장 살인의 죄 및 같은 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와 관련된 사건
- 5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사건
- 6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, 제4조의2, 제5조,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, 제5조의9부터 제5조의 13까지, 제6조, 제8조, 제8조의2, 제9조,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가중처벌하는 죄와 관련된 사건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・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의2

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등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의2(수사기관등의 수사 개	제53조의2(수사기관등의 수사 개
시・종료 통보) 수사기관등은	시・종료 통보)
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	
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	
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	
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	
통보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「형법」 제2편제13장 방화
	와 실화의 죄, 같은 편 제18
	장 통화에 관한 죄, 같은 편
	제19장 유가증권, 우표와 인
	지에 관한 죄, 같은 편 제23
	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,
	같은 편 제24장 살인의 죄 및
	같은 편 제39장 사기와 공갈
	의 죄와 관련된 사건
<u>&lt;신 설&gt;</u>	5.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
	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4호에
	따른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
	<u>사건</u>

### <신 설>

6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부터 제4조 까지, 제4조의2, 제5조, 제5조 의2부터 제5조의5까지, 제5조 의9부터 제5조의13까지, 제6조, 제8조, 제8조의2, 제9조,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와 관련된 사건